

변경전후 대비표

변경전	변경후
<p>제3조 (수수료의 구분) 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일임·자문자산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보수 :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그 종류는 아래 각호와 같다. 가. ~ 라. (생략) <신설></p> <p>2. 수수료 : 투자자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아래 각호와 같다.</p> <p>가. (생략) 나. 환매수수료 :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<u>간접투자기구의 운용 안정성과 환매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간접투자기구에 편입된다.</u></p> <p>다.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 : 투자자가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<u>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라 성과수수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조 (수수료의 구분) 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일임·자문자산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보수 :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그 종류는 아래 각호와 같다.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<u>바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</u></p> <p>2. 수수료 : 투자자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 <u>및 투자일임재산·투자자문재산</u>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아래 각호와 같다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 나. 환매수수료 :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<u>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안정성과 환매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다.</u></p> <p>다.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 : 투자자가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금전 <u>을 말하며 법 제98조의2 및 법 시행령 제99조의2 등에 따라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미리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5조 (수수료의 부과절차)</p> <p>① <u>회사의 마케팅팀장은 해당부서의 신상품에 대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해당 운용본부장 및 운용지원본부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심의하며,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친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마케팅팀장 및 준법감시인은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~④ (생략)</p>	<p>제5조 (수수료의 부과절차)</p> <p>① <u>신상품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해당 부서의 협의를 거쳐 상품협의체에서 결정한다.</u></p> <p>② <u>회사는</u>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

<p>제8조 (수수료의 인상)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<u>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8조 (수수료의 인상)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<u>집합투자규약</u>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<u>집합투자자총회</u>의 결의를 거쳐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u>다만,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
<p><신 설></p>	<p><u>부 칙</u> <u>제 1 조(시행일) 201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